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 58
----------	----------

발의일자: 2022. 7. 12.

발 의 자: 박성호, 정정희, 조기만, 김현진,
최세진, 김희동, 김성한, 강선영,
이종숙, 김민석, 김순옥, 전철규

1. 의결주문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65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설치목적

-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구성

- 위원회 정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선임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 활동기간

-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에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7조제1항 단서와 제3항, 제8조제4항을 준용하고, 제9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